

# 군산상일고등학교 생활규정

##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헌법(제10·12·17·31·37조), 교육기본법(제5·12·13조), 초중등 교육법(제8·17·1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30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학교폭력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조치에 관한 규정(부령),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239조), 유엔아동권리협약(제12·16·27·28조)을 근거로 하여, 군산상일고등 학교의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학생 을 **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원칙)**

1. 학생의 **교육**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2. 학생의 **교육**는 문제 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보다는 예방지도에 중점을 준다.
3. 징계는 학생의 평소 품행과 동기, 과정 등을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처리하되 교육적인 면을 중시하여 처벌보다는 선도**교육** 위주로 처리한다.

## (신설)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3조 【학습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않는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에 없는 교내·외 행사 참석을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 ③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와 제91조 제1항에 근거하여 현장 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해당)

**제4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가 있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보충수업이나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 하지 않으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③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 ②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학생,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을 포함한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③ 학교는 차별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
- ④ 학교는 혐오표현으로부터 소수 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제6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 기관에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학생은 특정 집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혐오 표현, 모욕,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 제7조 【안전에 관한 권리】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주민과 협력한다.

#### 제8조 【휴식을 취할 권리】

-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몸과 마음의 발달을 위해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보장하며 정규교과 시간 외의 활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 제9조 【건강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필요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생리로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의료적 확인(진단서, 보호자 동의서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
- ③ 학교의 장은 충분한 보건시설과 쾌적한 환경(냉난방, 미세먼지 제거 등)을 확보

하고 유지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건강, 양심, 종교에 따른 식단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

#### 제10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 ② 교복(춘추복·하복·동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③ 방한용 덧옷 등의 착용 여부와, 색상·형태 등은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교복 착용 여부, 교복 착용 시기, 치마나 바지 착용 등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 제11조 【사생활의 자유】

- ① 학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지 않는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보관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때로 최소화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검사를 하지 않는다.
-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한다.
- ③ 학교는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다.

#### 제12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① 학생은 가족, 친구관계, 성적, 정계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를 달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학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 ④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때는 이를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 제13조 【정보에 관한 권리】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② 학생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의 정보를 공개 청구할 권리가 있다.
-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이 정확하지 않거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거나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으면 고치거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 제14조 【양심·종교의 자유】

-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지 않는다.

### 제15조 【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가 있다.

④ 학생은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⑤ 학교의 장은 교지를 포함한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 누리집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을 지원한다.

### 제16조 【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교는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 활동을 보장한다.

② 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학생회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학생회 예산은 학생회가 운영하며, 담당교사를 통해 개산급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③ 학교는 성적, 징계 등을 이유로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④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⑤ 동아리는 학술제, 예술제, 축제 등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 제17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 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한다.

### 제18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학생 대표는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9조 【정치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만 16세 이상의 학생은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만 18세 이상의 학생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정치 참여를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제20조 【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해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의 청구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제21조(학생의 책임)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
2.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책임
3.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4.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적 권한을 존중할 책임
5. 학교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
6. 학생간 서로 존중하며 학교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책임
7.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책임
8.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전자기기 사용 규칙을 지킬 책임
9. 학교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를 책임
10.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11. 그 밖의 보편타당한 학생의 책임

## 제 3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제22조(구성) 학생들의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두며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학생생활안전부장, 교육과정부장, 상담교사, 해당학년 학년부장, 사안담당교사로 구성하고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인사, 생활교육 관련 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교감은 위원장이 되고 본 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통괄한다.
3. 학생생활안전부장은 부위원장이 되고 사안담당교사가 간사를 한다.

### 제23조(심의) 이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24조(사안 설명 및 의견진술) 본위원회는 사안 심의 전에 학생생활안전부 사안담당교사의 설명과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 할 기회를 부여하며 담임교사의 의견을 청취한다. 다만,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25조(학교장의 재심요구 및 결재)**

1.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2. 학교장이 재심을 요구한 징계사안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3.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징계 여부와 징계의 종류 결정은 학교장의 결재로 확정한다.

**제26조(학생 또는 학부모의 재심청구) - 재심 청구 날짜 수정 가능 (5일, 3일 이내)**

1. 위원회 또는 소속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학부모는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제 2항의 재심 결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적법한 절차에 의한 징계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 처분에 가중하여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제27조(기록 및 사무처리)**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사안담당 교사가 기록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전자문서로 등록한다.

## 제 4장 징 계

**제28조(체벌금지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1.3.18.) 31조 제8항에 따라, 체벌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학칙에 따라 훈육·훈계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금지한다.

**제29조 (종류)**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교내봉사 : 5일 이내의 기간
2. 사회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
3. 특별교육이수 : 5일 이상의 기간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기간
5. 퇴학처분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행할 수 있다.
  - (1) 학칙을 위반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학생
  - (2) 결석이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한 학생
  -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학생

제30조(방법)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는 그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1. 교내봉사

- (1)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은 받게 하고 담임 및 학생생활안전부 교사, 상담 교사의 책임지도를 받도록 한다.
- (2)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업 외의 시간(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에 학교환경 미화작업, 교직원의 업무보조, 교재·교구 정비, 교내 도서관 도서정비 등의 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 (3)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안전부 및 상담교사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
- (4) 교내 봉사활동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 (5) 교내봉사는 학생부 봉사활동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 2. 사회봉사

- (1) 일정 기간 학생을 다음과 같은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의 봉사활동
  - (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등의 봉사활동
  - (다) 사회복지 기관(노인정, 장애시설기관, 사회복지관 등)에 위탁하여 해당 기관에 서 지정한 봉사활동
- (2) 봉사활동 기관은 학생, 보호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 (3) 사회 봉사활동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무단이탈의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 (4) 사회봉사는 학생부 봉사활동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 (5) 사회봉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을 연장하여 교내봉사로 대신할 수 있다.

### 3. 특별교육이수

- (1) 일정 기간 사안에 알맞은 다음과 같은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나)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중독 치료학교의 교육 이수
  - (다) 행동·심리상의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 (라) 부적응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 기간의 교육 이수
  - (마) 상담자원봉사자, 청소년대화의 광장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 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바) 학교장이 결정한 기간, 프로그램(치료·상담·적응·개별 학습 지도)에 의 한 교내 교육이수

- (2) 특별교육 기관 또는 방법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정하여 학생, 보호자와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
- (3) 특별교육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무단이탈 및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하는 경우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 4. 출석정지

- (1) 학생을 퇴학처분하기 전에 1회 10일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단,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2) 출석정지 기간(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 조치 포함)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가) 출석정지 기간 동안 학생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내 지정된 장소에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 (나) 출석정지 기간 동안 학생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내·외 상담기관을 통해 상담의 기회를 제공한다.
- (3) 부과 내용
  - (가)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 · 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나) 출석정지로 인한 가정학습 기간 동안 사회봉사 이수 증명서(실사 확인), 또는 특별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나 학교에서 부여한 가정 학습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는 경우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5. 퇴학처분

- (1) 퇴학처분과 동시 학교장은 학생의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고, 학생의 희망에 따라 사회교육기관, 산업체특별학급, 직업교육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전환하거나 직업도 알선 할 수 있다.
- (2) 퇴학처분일 경우, 교육적인 면에서 학생 및 학부모가 위탁교육을 수용하면 위탁교육으로 변경을 고려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복교할 경우 제적 처리한다.

#### 6.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학교나 해당 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 제31조(절차)

1. 모든 징계사안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에게 상신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단,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대선도위원회 결정사항을 직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케 할 수 있다)
2. 퇴학 처분 시 학생 징계대장에는 O년 O월 O일 퇴학 처분(OO학교로 전·편입학, OO기관입소, 취업 등)으로 기재하고 진로 상담 결과를 간략히 기재한다.

### 제32조(결정 및 징계내용 통보)

1. 징계기간은 학교장의 결재일로부터 징계기간이 시작된다.
2.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하고 교육에 협조도록 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 제33조(징계 학생 고사 응시)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가정학습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라도 고사 기간 중에는 고사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단 고사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한다)

### 제34조(징계 경감)

1.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의 경우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완성인권부장학생생활안전부장이 담당교사 및 진로상담교사와 협의하여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이수의 감면을 학교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징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 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1회 이상 학교장 이상의 상을 받은 학생은 징계에 있어 그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징계의 하향 적용 가능)

### 제35조(징계 해제) 징계 해제 학생은 징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 해제 전에 학생생활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5장 징계 기준

### 제36조(징계기준의 적용)

구분	항	내용	징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예절	1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	○	○	○	○	
준법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됨	○	○	○	○	○
	2	학교나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를 불응하거나 고의로 위반 또는 반대		○	○	○	
	3	교내 기물, 공공시설을 고의로 훼손 및 파괴		○	○	○	○
	4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됨	○	○	○	○	
	5	사법기관에 구속되어 석방			○	○	○
	6	형법상 유죄로 판결			○	○	○
	7	공공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		○	○	○	
	8	개인정보를 도용 · 복제 · 유출	○	○	○	○	
유해 물품	1	음주			○	○	
	2	흡연(세부 기준)	○	○	○	○	
	3	담배, 전자담배, 라이터 등 유해물품 소지 수업 중 미인정으로 전자기기 사용	교육부고시(제2023-28호) 세부기준에 첨부 학생으로부터 분리 · 보관할 수 있는 물품보관방법을 따름				
	4	환각제, 본드, 대마초 등 마약류 복용			○	○	○
금품	1	타인의 금품을 절취 또는 사취			○	○	
	2	상습적으로 타인의 금품과 물품을 빌린 후 반환하지 않음	○	○	○		
퇴폐 행위	1	외설물을 소지, 탐독, 시청, 제작, 게시, 낙서, 회람	소지	시청	제작	게시	
	2	학생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			○	○	○
	3	도박	1회	2회	3회	4회 이상	

집단	1	불법집회나 불량 써潺에 관여		○	○		
	2	학교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 목적으로 학생들의 모임을 꾀하거나 동조			○	○	
수업	1	수업 거부			○	○	○
	2	<b>상습적으로 수업방해를 하거나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b>		○	○	○	
고사 부정	1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에 동조		○	○	○	
	2	시험 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			○	○	
	3	시험을 거부하거나 고사에 불응할 것을 선동 또는 동조				○	
근태	1	월말 통계를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결석 3일 이상(미인정조퇴, 미인정지각, 미인정결과 합 3회는 미인정결석 1일로 계산)(세부기준)		○	○	○	○
미인정 외출	1	<b>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 외 구역을 미인정 외출 (세부기준)</b>		○	○	○	
명예 실추	1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		○	○	○	○
개전 의사 없음	1	학교 내의 봉사 처벌을 받은 후 재학 중 재차 학교 내의 봉사 처벌에 해당한 행위를 함		○			
	2	<b>교내의 봉사 처벌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거나 교내봉사를 이행하지 아니함</b>		○			
	3	사회봉사 처벌을 받은 후 재학 중 재차 사회봉사 처벌에 상응하는 행위를 함			○		
	4	<b>사회봉사 처벌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거나 사회봉사를 이행하지 아니함</b>			○		
조치 미이행	5	특별교육이수 처벌을 받은 후 재학 중 재차 특별교육이수 처벌에 상응한 행위를 함				○	
	6	<b>특별교육이수 처벌 중 개전의 정이 없거나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지 아니함</b>				○	
	7	재학 기간 중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3회 이상 받음				○	
	8	출석정지 30일 이상 또는 출석정지 3회 처분 이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음					○

세부 기준표	흡연	1차 ~ 2차 적발	1차 적발	교내 봉사 5시간 (15일 이내 이행)	2차 적발	교내 봉사 10시간 (30일 이내 이행)
		3차 ~ 4차 적발	3차 적발	사회 봉사 20시간 (45일 이내 이행)	4차 적발	사회 봉사 30시간 (60일 이내 이행)
		5차 ~ 6차 적발	5차 적발	특별교육 1개월	6차 적발	특별교육 3개월
		7차 ~ 8차 적발	7차 적발	출석정지 6일	8차 적발	출석정지 8일
		9차 적발	전학 또는 퇴학 중 택1			
	근태	1차 ~ 2차 위반	1차 위반	교내 봉사 5시간 (15일 이내 이행)	2차 위반	교내 봉사 10시간 (30일 이내 이행)
		3차 ~ 4차 위반	3차 위반	사회 봉사 20시간 (45일 이내 이행)	4차 위반	사회 봉사 30시간 (60일 이내 이행)
		5차 ~ 6차 위반	5차 위반	특별교육 1개월	6차 위반	특별교육 3개월
		7차 ~ 8차 위반	7차 위반	출석정지 6일	8차 위반	출석정지 8일
		9차 위반	전학 또는 퇴학 중 택1			
조치 결정시 유의점	미인정 외출	1회 ~ 4회 적발	1 ~ 2회 적발	담임교사 상담 담임교사 훈육	3 ~ 4회 적발	학년부장 상담 학년부장 훈육
		5회 ~ 7회 적발	5 ~ 6회 적발	학생부장 상담 학생부장 훈육	7회 적발	교내 봉사 2시간 (7일 이내 이행)
		8회 ~ 9회 적발	8회 적발	교내 봉사 5시간 (15일 이내 이행)	9회 적발	사회 봉사 10시간 (30일 이내 이행)
		10회 ~ 11회 적발	10회 적발	사회 봉사 20시간 (45일 이내 이행)	11회 적발	사회 봉사 30시간 (60일 이내 이행)
		12회 적발 이상	준법 1항, 2항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계의 수위는 단계별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징계 사안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li> <li>- 징계 기준 이외의 위반사항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li> <li>- 1,2학년 학생의 경우 징계조치 사항이 종업식 기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당해연도 위탁교육기관 사정상 미이수한 경우 등 진급 심사회 심의를 거쳐 다음학년도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행하도록 한다.</li> <li>- 3학년 학생의 경우 징계조치 사항이 졸업식 기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졸업식 기준일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li> <li>- 학생의 징계 조치별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징계 행위의 심각성 · 지속성 · 고의성</li> <li>2.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li> <li>3.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li> <li>4.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 장애여부, 노약자 등 여부 및 그 정도</li> <li>5.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li> </ol>					

## 제 6장 학생 용의·복장 규정

제37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이 항상 청결·단정한 용의와 복장을 갖추게 하여 검소하고 예의 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8조 원칙)

1. 복장은 통일된 교복을 착용하도록 한다.
2. 용의는 각자의 개성에 맞도록 권장한다.
3. 용의와 복장은 항상 청결·단정·검소하고 품위를 유지하도록 한다.

### 제39조 (구분)

1. 교복은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하며 착용 기간은 다음과 같다.
  - 가. 동복 : 10월 1일 ~ 익년 5월 31일
  - 나. 하복 : 6월 1일 ~ 9월 30일
2. 필요에 따라 동복과 하복의 혼합 착용 기간을 둘 수 있다.

### 제40조 (동복) 동복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남학생
  - ① 색상 - 진한 남색 재킷, 진한 남색 바지
  - ② 디자인 - 아이보리 니트조끼를 포함한 정장 스타일
  - ③ 흰색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진한 남색 재킷을 입는다.
- (2) 여학생
  - ① 색상 - 진한 남색 재킷, 진한 남색 치마(바지)
  - ② 디자인 - 아이보리 니트조끼를 포함한 정장 스타일
  - ③ 흰색 블라우스에 넥타이를 매고 진한 남색 재킷을 입는다.
- (3) 공통사항
  - ① 교복 안에 글자나 무늬가 없는 무채색 폴라티를 착용할 수 있다. (남·여 공통)
  - ② 흰 와이셔츠를 입는 경우에는 넥타이를 반드시 맨다.
  - ③ 너무 튀지 않는 색상의 외투를 허용한다.(용의 복장 획일적 규제 금지)

### 제41조 (하복) 하복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남학생
  - ① 색상 : 흰색 상의, 진한 남색 바지
  - ② 디자인 : 와이셔츠를 포함한 정장
- (2) 여학생
  - ① 색상 : 흰색 상의, 진한 남색 하의(치마 또는 바지)
  - ② 디자인 : 블라우스를 포함한 정장
  - ③ 부착물 : 리본타이를 목에 걸어 노출시킴
- (3) 공통사항
  - ① 상의는 와이셔츠(블라우스) 대신 카라가 있는 흰색의 티를 입을 수 있다.
  - ② 카라티를 입었을 경우 속옷이 비치지 않아야 한다.

**제42조 (착복 요령)** 교복 착용 요령은 다음과 같다.

1. 등교 및 하교 때나 교내에서는 항상 교복을 착용한다. 다만 등교 후 특수한 수업이나 활동 중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동복 착용 때에는 교복 안에 흰색이나 회색의 단색 셔츠를 착용한다.
3. 동복 착용 때에는 교복 위에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 이때, 외투는 원색 이외의 것으로 겸소해야 한다.
4. 다음과 같은 교복은 금지한다.

※ 치마 끝이 무릎 위로 과도하게 올라간 경우

## 군산상일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 1. 섬유 혼용률

#### 가. 동복

성별 구분	남 학생	여 학생
자켓(상의)	울 55~65%, 폴리에스터 35~45%, 폴리 우레탄 2~5 %	울 55~65%, 폴리에스터 35~45%, 폴리 우레탄 2~5 %
와이셔츠/블라우스 (상의)	폴리에스터 70~80%, 레이온20~30%	폴리에스터 70~80%, 레이온20~30%
조끼	울 45~55%, 아크릴 45~55%,	울 45~55%, 아크릴 45~55%,
바지/스커트 (하의)	울 55~65%, 폴리에스터 35~45%, 폴리 우레탄 2~5 %	울 55~65%, 폴리에스터 35~45%, 폴리 우레탄 2~5 %
후드집업	폴리에스터 60~70%, 면 30%~40%, 폴리 우레탄 2~5 %	폴리에스터 60~70%, 면 30%~40%, 폴리 우레탄 2~5 %
넥타이	폴리에스터 100%	폴리에스터 100%

#### 나. 하복

성별 구분	남 학생	여 학생
와이셔츠/블라우스 (상의)	폴리 75%, 레이온 25%	폴리 75%, 레이온 25%
바지/반바지/스커트 (하의)	폴리에스터 90~95%, 폴리우레탄 5~10%	울 55~65%, 폴리에스터 35~45%
상의(생활티)	폴리에스터 100%(쿨맥스)	폴리에스터 100%(쿨맥스)
리본타이		폴리에스터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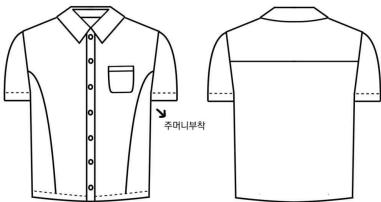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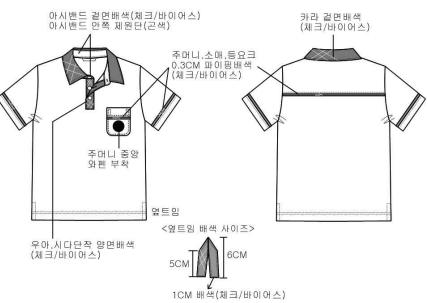
## 2. 군산상일고등학교 여학생, 남학생 동복 사양서

남학생 동복		여학생 동복	
재킷	소재 및 디자인	재킷	소재 및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상 - 진한 남색 - 흰색</li> <li>○ 싱글 투버튼 교표 - 교표부착(지름 3.5cm)</li> </ul>  <p>울 55~65% 폴리에스터 35~45% 플리 우레탄 2~5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상 - 진한 남색 - 흰색</li> <li>○ 싱글 투버튼 교표 부착 (남자켓 동일)</li> </ul>  <p>울 55~65% 폴리에스터 35~45% 플리 우레탄 2~5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상 - 아이보리 데두리선은 남색 교표 부착(남자켓 동일)</li> </ul>  <p>울 45~55%, 아크릴 45~5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상 - 진한 남색</li> <li>○ 디자인 - 양쪽 2개 외주름</li> </ul> <p>울 55~65% 폴리에스터 35~45% 플리 우레탄 2~5 %</p>
<b>와이셔츠 또는 티셔츠</b>	<b>소재 및 디자인</b>	<b>블라우스 또는 티셔츠</b>	<b>소재 및 디자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상 - 흰색</li> <li>○ 디자인 Y카라, 주머니</li> </ul> <p>폴리에스터 70~80% 레이온20~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상 - 흰색</li> <li>○ 디자인 Y카라</li> </ul> <p>폴리에스터 70~80% 레이온20~30%</p>
<b>후드집업</b>	<b>소재 및 디자인</b>	<b>바지(남,여)</b>	<b>소재 및 디자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상 - 곤색</li> <li>○ 디자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입술 주머니,</li> <li>- 교포 부착 (지름 3.5cm)</li> <li>- 등판 자수(29CM * 13CM)</li> </ul> </li> </ul>   <p>폴리에스터 60~70% 면 30% ~ 40% 플리 우레탄 2 ~ 5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색상 - 진한 남색</li> <li>○ 디자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털 바지부리 7.5인치</li> <li>- 허리 조절기 부탁</li> </ul> </li> </ul> <p>울 55~65% 폴리에스터 35~45% 플리 우레탄 2~5 %</p>
<p>※ 안감(동복 자켓, 바지, 스커트), 리본, 넥타이 – 폴리에스터 100%</p>			

### 3. 군산상일고등학교 여학생 하복 사양서

복종	그림(전,후면)	제원	특징(제작요령)
블라우스		1. 혼용률: 폴리75%, 레이온 25% 2. 색상: -몸판: 백색	1. 소매 어깨쪽 주름, 소매 끝 맞주름 2. 카라 안쪽 2cm 폭 체크 바이어스 배색 3. 앞 단추 5개 부착
스커트		1. 혼용률: 올 55~65%, 폴리에스터 35~45% 2. 색상: 진곤색	1. 플레이스커트(105도)
생활티		1. 혼용률 폴리 100% 2. 색상 -몸판 : 곤색 -배색 : 검정색 바탕 회색 체크 3. 교표	1. 몸판 곤색 반팔 생활복 2. 카라 체크 바이어스 배색 3. 옥 밴드 겉면 체크 바이어스 /안쪽 몸판원단 4. 등요크, 주머니, 소매 파이핑 배색 (0.3cm 폭 체크 바이어스) 7. 교표(와펜) - 원쪽 가슴 위치 - 사이즈 3X3 8. 겉으로 상표가 드러나지 않아야 함

#### 4. 군산상일고등학교 남학생 하복 사양서

복종	그림(전,후면)	제원	특징(제작요령)
와이 셔츠		<p>1. 혼용율: 폴리 75%, 레이온 25%</p> <p>2. 색상 -몸판: 백색</p>	<p>1. 소매 끝 안쪽 2cm 폭 체크 바이어스 배색</p> <p>2. 카라 안쪽 2cm 폭 체크 바이어스 배색</p> <p>3. 뒤, 등판 안쪽 망사 부착</p> <p>4. 앞(왼쪽)단 작크처리</p> <p>5. 앞 단추 7개 부착</p>
바지( 남, 여)		<p>2. 혼용율: 폴리에스터 90~95% 폴리우레탄 5~10%</p> <p>2. 색상: 진곤색</p>	<p>1. 노턱 바지부리 7.5인치</p> <p>2. 허리 조절기 부착</p>
생활 티		<p>1. 혼용율 폴리 100%</p> <p>2. 색상 -몸판 : 곤색 -배색 : 검정 색 바탕 회색 체크</p> <p>3. 교표</p>	<p>1. 몸판 곤색 반팔 생활복</p> <p>2. 카라 체크 바이어스 배색</p> <p>3. 목 랜드 걸면 체크 바이어스 /안쪽 몸판원단</p> <p>4. 등요크, 주머니, 소매 파이핑 배색 (0.3cm 폭 체크 바이어스)</p> <p>7. 교표(와펜) - 왼쪽 가슴 위치 - 사이즈 3X3</p> <p>8. 겉으로 상표가 드러나지 않아야 함</p>

## 5. 리본타이/넥타이

복종	그림(전,후면)	제원	특징(제작요령)
넥타이 (동복)		1. 혼용률: 폴리 100% 2. 색상: 진곤색	1. 기본남녀타이 2. 버튼식 자동넥타이
리본타이 (하복)	 	1. 혼용률: 폴리 100% 2. 색상: 진곤색	1. 가로 13cm 2. 세로 18cm

## 6. 교복 실물사진

교복실물사진		
하복(여학생)		
		
※ 남색 선 없음.	※ 남색 선 없음.	
하복(남학생)		
		

동복(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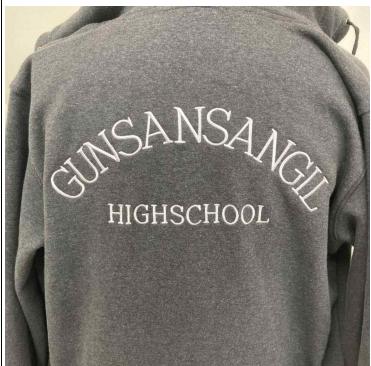
동복(남학생)



후드집업(선택적 추가 구매), 생활티



※ 원단색깔: 남색



※ 원단색깔: 남색



리본타이, 넥타이



※ 여학생 하복 리본타이



### 동복 단추



※ 월계관 문양이 들어가야 함

## 7. 기타사항

- 가.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는 군산상일고등학교에 있다.
- 나. 군산상일고등학교: 교무실(063)469-7220 / 행정실(063)469-7216 / 팩스번호(063)463-7259

제43조(신발) 신발의 착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운동화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되, 굽이 높은 구두나 화려한 원색의 구두는 착용하지 않는다.
3. 등·하교 시 실내화 및 슬리퍼의 착용은 금지한다.

제44조(두발) 두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 사항
  - (1) 복장, 두발의 길이 · 모양 · 색상 등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 (2) 무쓰 · 젤 · 왁스 · 스프레이 등을 적당량 허용한다.

제45조(위생)

- ① 몸은 항상 깨끗이 하여야 한다.
- ② 두발, 수염, 손톱, 발톱 기타 용모는 항상 단정하고 정결하여야 한다.

제46조(소지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특별히 허락한 물품은 예외로 한다.

1. 칼, 송곳, 못 등 흉기가 될 만한 물건과 성냥, 라이터,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인화성 물질은 가지고 다녀서는 안 된다.
2.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3.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4. 인권침해, 혐오 표현, 폭력 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5.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각종 자료나 물품
6.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7. 기타 학생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 매체물·약물·물건 등

#### 제47조(소지품 검사)

1. 학생과 교직원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그것을 사용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2.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46조가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2) 제46조가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다른 사람과 흡입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3. 소지품을 검사할 때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하여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진 않도록 간결하고 신속하게 한다.
4.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는 먼저 대처하고 나중에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 제48조 (학생 개인물품 관리)

1.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청소년이 소지하기에 부적절한 물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2. 교원은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3. 학생이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는 해당 수업 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원이 보관할 수 있다.
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은 별표 1과 같다.

#### 제49조(전자기기 사용)

1. 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 행사,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교사는 교육활동 시간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4. 학생이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교사가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주의를 3회 받으면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한해 5일 이내에서 해당 전자기기를 보관

조치할 수 있다.

5. 제4항의 보관 조치가 3회 이상일 때 또는 학생이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6. 고사(시험)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사(시험)중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 제 7장 규정의 개정

### 제50조(규정의 개정)

1. 규정을 제·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거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개정할 수 있다.
2. 그 과정에서 학생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운영위원회 심의 시 학생대표가 참관인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3. 규정개정심의위원회
  -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교육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학생 위원은 전체의 4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 (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3)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학생 보호자) 대표, 학생 대표와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 사람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기타의 규정)**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 사안의 처리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3월 2일부로 시행한다.

1차 개정 : 2004년 9월 1일 직원회의에서 개정

2차 개정: 2006년 4월 17일 직원회의에서 선도기준 개정

3차 개정: 2006년 6월 19일 직원회의에서 학생회장·부회장 자격조건,  
두발규정 완화 개정

4차 개정: 2006년 12월 18일 직원회의에서 징계의 종류와 기간을 개정

5차 개정: 2008년 12월 18일 직원회의에서 선도기준 및 교복규정을 개정

6차 개정: 2011년 5월 3일 ‘2011 학교생활규정 개정 방향(2011.2.)’에 의거 학교생활  
규정 제·개정 전북교육청 학교생활규정 검토결과에 따른 보완(2011.7.14.)

7차 개정: 2012년 4월 9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2.3.)’에 의거 학교  
생활규정 개정

8차 개정: 2014년 4월 16일 ‘전북인권조례(2013.7.)’에 의거 학교생활규정 개정

9차 개정 : 2014년 4월 28일 교권침해 사례 등에 대한 보완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회 심의 후 개정, 2014년 5월 7일부터 시행

10차 개정 : 학교공동체 의견을 수렴하여 2015년 4월 8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개  
정,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

11차 개정 : 2016년 9월 22일 출석정지 징계학생에 대한 학습기회 제공을 위해 학교운  
영위원회 심의 후 개정, 2016년 10월 4일부터 시행

12차 개정 : 2017년 2월 16일 징계 기준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  
의 후 개정,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

13차 개정 : 2017년 9월 20일 인권친화적인 학생 생활지도를 위한 선도위원회 외부위  
원 위촉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개정, 2017년 10월 10일부터 시행

14차 개정: 학교공동체 의견을 수렴하여 2018년 4월 12일 흡연 및 근태 관련 징계 기준  
과 핸드폰 보관방법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개정, 2018년 4월 23일부터 시행

15차 개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관련 규정을 2020년 4월 28일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 후 개정, 2020년 5월 11일부터 시행

16차 개정 : 전북교육청 학생생활교육의 방향과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징계 기준에  
관련된 규정을 2022년 1월 28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개정,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

17차 개정 : 군산상일고등학교로 전환됨에 따라 교복에 관한 규정을 2023년 6월 22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개정,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

■ 상일고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1]

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제22조 관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제12조(훈육)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제12조 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학칙 규정(학생분리 장소 · 시간 및 학습지원) ]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기능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거나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① 학년부실 (담임) ② 학생활안전부실 → 교감 → 교장	◦ 교사가 학교의 장에게 학생 인계 요청  ◦ 학교의 장 책임하에 관리자가 지정 장소로 이동 및 지도  ◦ 단, 관리자 부재 시 교직원이 협력하여 학생 분리 및 지도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내 같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결과) 2회 하는 경우	학년부실 → (담임) 학생활안전부실 → 교감 → 교장	◦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20분) 보장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3호 '나항'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거나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학교의 장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시전에 통지함	
	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안전부실 (학교폭력전담교사) (60분 이내)		학교폭력 사안 처리조사 또는 학생 상담
기타	- 3호 지도 나항 부터는 미인정결과처리(수업방해활동) - 제12조 제6항의 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의거하여 4호지도 나 항을 제외한 모든 지도에 불이행시 1회 주의 경고(학생생활안전부장) 2회 이상 학교생활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함. - 분리 시간은 수업 종료 시까지(단, 학생이 수업 종료 전이라도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경우 학급으로 복귀 가능 등 상황에 맞게 수정 가능)			
유의점	- 고의적으로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 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 장소 선정 시 학생들의 선호 장소는 가급적 제외, 분리 공간의 환경과 안전(시설, 위험도구 등) 등을 확인 - 학칙으로 적절한 분리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 이상의 지나친 분리는 자제 - 분리가 실시되는 동안 학생만 특정 공간에 방치하지 않아야 함			

■ 상일고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2]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제25조 관련)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제12조(훈육)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

**[ 제12조 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물품보관) ]**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10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핸드폰, 게임기 등)	수업시간	교과 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차 : 주의 실시</li> <li>·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li> <li>·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li> <li>·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학급담임 알림</li> </ul>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흡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께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li> <li>·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학생생활안전부장)</li> </ul> <p>※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내교 상담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li> </ul> <p>※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졸업시) 경과 이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p>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졸업시	학생생활 안전부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기타		제12조 제9항에 대한 학칙규정(물품보관)에 의거하여 제1 요건에 대한 학생 불이행 시 미인정 결과 처리(수업방해활동)		